

부산진구보건소 영양플러스 2026년 하반기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

영양플러스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1. 신청 기간 : 7.27.(월) ~ 7.31.(금) 17:00 까지,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
- 온라인 신청: 이메일 접수(hj459@korea.kr)
- 방문 신청: **부산진구청** 별관 건강증진센터 3층 영양상담실, 10~17시(12~13시 점심시간) **보건소X**

2. 대상 자격 (※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)

① 거주 기준	부산진구 주민														
② 대상 기준	- 영아 (생후 12개월 미만) - 유아 (66개월 미만) - 임신부 - 출산·수유부 (출산 후 6개월 미만)														
③ 소득 기준	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※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(80% 이하)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가구원수</th><th>2인</th><th>3인</th><th>4인</th><th>5인</th><th>6인</th><th>7인</th></tr><tr><td>중위소득 80%(원)</td><td>3,359,434</td><td>4,287,229</td><td>5,195,790</td><td>6,045,375</td><td>6,844,762</td><td>7,612,120</td></tr></table>	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중위소득 80%(원)	3,359,434	4,287,229	5,195,790	6,045,375	6,844,762	7,612,120
	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							
	중위소득 80%(원)	3,359,434	4,287,229	5,195,790	6,045,375	6,844,762	7,612,120								
	※ 가구원 수 포함 대상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범위</th></tr><tr><td>① 동일 주민등록</td><td>• 신청인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, 신청인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(태아 포함)</td></tr><tr><td>② 별도 주민등록</td><td>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미성년 자녀</td></tr><tr><td>③ 외국인</td><td>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,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</td></tr></table>	구분	범위	① 동일 주민등록	• 신청인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, 신청인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(태아 포함)	② 별도 주민등록	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미성년 자녀	③ 외국인	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,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						
구분	범위														
① 동일 주민등록	• 신청인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, 신청인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(태아 포함)														
② 별도 주민등록	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미성년 자녀														
③ 외국인	•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,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														
※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‘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,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(바우처 사업군)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															
※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, 절차, 방법 등은 "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"를 준용함															
④ 영양위험요인	영양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등) ※소득 기준 적합자에 한해 영양평가 방문 시 측정														

※ 신청 자격 충족 시 가구 내 여러 명 신청 가능

※ [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]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[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]에 참여하는 임신·출산·수유부는(영유아는 예외) 중복 수혜 불가, [농식품바우처사업]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됨

3. 제출서류

① 대상자 가구정보 신청서	[신청서식] p.1~2 작성	
② 소득재산조사 동의서	[신청서식] p.3 작성	
③ 가구원 확인 서류	[주민등록등본] 또는 [신청서식] p.4 제출	
④ 기타 서류 (※해당자만 제출)	[산모수첩 사본], [임신진단서], [임신헌인서] 중 1부	- 임신부
	[증명 서류] 또는 [신청서식] p.4	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
	[가족관계증명서]	-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,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- 미혼, 이혼, 다문화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

4. 신청 절차

신청 및 접수 (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)	소득재산조사 결과 개별 통보	영양평가 (신청 대상 영유아와 함께 방문)	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	대상자로 등록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※ 소득재산조사는 의뢰일로부터 **5~7일 이상 소요**됩니다.

※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신청 바랍니다.

※ 제출서류 미비, 영양평가 일정 조율을 위해 신청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(전화, 문자)하였으나 **연락 불가 시 신청이 취소**됩니다.

※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득·재산 조사 결과 통지일(통지방법: 문자, 이메일 등)의 **다음 영업일부터 15일 이내**에,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5. 사업 내용

①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

-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
- ※ 영양교육을 위해 월 1회 방문하셔야 하니, 참여 가능한 가구만 신청 바랍니다.

②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(매월 가정으로 배송)

-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를 처방하며, 적절한 품목과 양이 제공됩니다.
- 조제분유, 쌀, 감자, 당근, 달걀, 우유, 검정콩, 김, 미역, 참치통조림, 오렌지주스 등

③ 정기적 영양평가

-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신·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를 파악
- 빈혈검사, 신장 및 체중 측정, 식품섭취조사 등